

제407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24. 3. 5. ~ 3. 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제 407회 임시회

(2024. 3. 5. ~ 3. 14.)

# 제407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가 힘차게 뜻을 올리고 있는 이 시기에 전북의 정치기반을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다행히 제22대 총선 전북 선거구가 우여곡절 끝에 10석이 유지됐지만 이번 사태를 볼 때 앞으로도 전북 흔들기는 지속될 우려가 큼니다.

공직선거법에서조차 수도권 초과밀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치권 인식은 지방과 큰 온도차가 있음이 이번에도 확인됐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올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또다시 전북 흔들기가 시도되지 않도록 힘을 기르고 정치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최근 전 국민의 이목을 모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의료계와의 갈등은 정부가 초래한 부분이 큼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정원 확대 규모는 적절한지,

문제진단 및 대안이 바르게 모색됐는지 의구심이 큼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지역 및 필수·공공의료 확충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도 도입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전북만 봐도 대부분의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이어서  
도민들이 적시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이 같은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제정되고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의료계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환자들과 도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간 코로나 창궐 등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준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우리 도민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당사자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례 시행 준비로  
애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특별자치도 성패 여부는 오롯이 지역 몫입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전북만의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새로운 특례 발굴에도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새롭고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익산과 남원, 완주, 무주, 부안 등 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 시·군, 대학 등이 협력한 결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해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구유출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을 교육혁신으로 찾기 위한 것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기관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도 포함된 늘봄학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전북에서도 이달부터 75곳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그러나 늘봄학교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온 관계기관들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드러난 문제는 해법을 찾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손질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 구성원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교육주체와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어  
저출생의 대표적인 원인인 맞벌이 부부의 돌봄공백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준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은 도정 방향성과 주요현안에 대한 타당성과 효용성 등을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진행상황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우호협력 협약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주의회에서  
매우 인상 깊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의회에서 인턴십을 하고 자유롭게 회의를 참관하는 등  
의회와 지역주민이 매우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의회뿐 아니라 도청과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회기가 견제와 대안 마련, 그리고 협치가 가능하여  
전북특별자치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국 주 영 은

# 목 차

## 제407회 임시회

###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8
2. 회기 및 운영 .....	8
3. 의 사 일 정 .....	9

###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14
2. 처 리 현 황 .....	15

###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55
2. 처 리 현 황 .....	55
3. 위원회별 처리현황 .....	56

###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24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57
2. 2024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	57
3. 제12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	58
4.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	58

# I. 집회 및 의사일정

##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24. 2. 27.(화)
- 집회 일자 : 2024. 3. 5.(화) 14:00
- 집회 사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

## 2. 회기 및 운영(제12대)

- 회 기 : 2024. 3. 5. ~ 3. 14.(10일간, 2024년 : 20일, 총누계 227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4일(연 누계 : 6, 총 누계 45)
  - 상임·특별위원회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농산업 경 제	문화건설 안 전	교 육	특 별
제407회 임사회	9	2	1	2	2	1	1	0
2024 년도	30	3	5	6	5	6	5	0
총 누 계	354	24	68	53	62	60	55	32

###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3. 5. (화) 14:00	<p><b>《 제1차 본회의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 회 식</li> <li>○ 간부소개</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li> <li>2.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li> <li>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li> <li>4.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li> <li>5.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li> </ol>	
3. 6. (수) 10:00	<p><b>《 제2차 본회의 》</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괄질문 · 일괄답변(5명)</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농산업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   ②문화건설안전위원회 운영숙 의원</li> <li>③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         ④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li> <li>⑤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충질문 · 답변</li> </ul>	
3. 7. (목) 10:00	<p><b>제3차 본회의 》</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문일답(1명)</li> <li>①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li> <li>○ 일괄질문 · 일괄답변(4명)</li> <li>①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   ②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li> <li>③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 ④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충질문 · 답변</li> </ul>	
3. 14. (목) 14:00	<p><b>《 제4차 본회의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분 자유발언(9명)</li> </ul> <p>－ 윤정훈 의원 , 최형열 의원, 문승우 의원, 박정희 의원,</p>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p>강태창 의원, 이병철 의원, 김희수 의원, 이정린 의원, 박정규 의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li> <li>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li> <li>7.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li> <li>9.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0.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1.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12.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li> <li>13.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지 지원 조례안</li> <li>14.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5.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6.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li> <li>17.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18.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19.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li> <li>20.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21.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li> <li>22.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23.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24.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25.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ol>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29.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32.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34.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효과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35. 국가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 영 위 원 회	3. 5.(화) 11: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li> <li>○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li> </ul>	
	3. 14.(목) 11:3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행정자치 위 원 회	3. 8.(금)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인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li> </ul> </li> <li>○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li> </ul>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3. 8.(금) 14:00		○ 현지의정활동 - 119특수대응단 현지 확인	
환경복지 위원회	3. 5.(화) 16:00	1	○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지 지원 조례안 ○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대이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8.(금) 10:00	2	○ 현지의정활동 -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	
농산업경제 위원회	3. 5.(화) 16:30	1	○ 미래산업국 소관 의안 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의안 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11.(금) 10:30	2	○ 현지의정활동 - 전북테크비즈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3. 8.(금) 10:00	1	○ 도민안전실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교육위원회	3. 8.(금)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심사</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li> <li>-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3. 8.(금) 14: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의정활동</li> <li>-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li> </ul>	

## Ⅱ. 의안접수 및 처리

### 1. 접수현황

####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407회 (2024. 3. 14.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38	30	14	16	0	1	0	0	0	5	2	
	누 계	839	391	196	193	2	7	0	226	35	131	49	
의 회	소계	금회	34	26	14	12	0	1	0	0	0	5	2
		누계	485	297	182	115	0	7	0	4	0	131	46
	의원	금회	30	23	14	9						5	2
		누계	456	289	180	109	0	0	0	0	0	128	39
	위원회	금회	4	3		3		1					
		누계	29	8	2	6	0	7	0	4	0	3	7
도지사	금 회	3	3		3								
	누 계	266	52	6	46	0	0	0	199	14	0	1	
교육감	금 회	1	1		1								
	누 계	88	42	8	32	2	0	0	23	21	0	2	

## 2. 처리현황

### ○ 총 괄

제407회 (2024. 3. 14.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38	38	34	4	0	0	0	0	0	
	누계	839	836	757	48	0	16	0	15	3	
조 례 안	소계	금회	30	30	26	4	0	0	0	0	0
		누계	391	389	354	21	0	3	0	11	2
	의회	금회	26	26	23	3					0
		누계	297	296	272	15	0	0	0	9	1
	도지사	금회	3	3	3	0					0
		누계	52	52	45	3	0	2	0	2	0
	교육감	금회	1	1		1					0
		누계	42	41	37	3	0	1	0	0	1
규 칙 안	금회	1	1	1						0	
	누계	7	7	7	0	0	0	0	0	0	
규 정 안	금회	0	0							0	
	누계	0	0							0	
승인동의안	금회	3	3	2					1	0	
	누계	226	226	193	16	0	13	0	4	0	
예산결산안	금회	0	0							0	
	누계	35	35	26	9	0	0	0	0	0	
건의결의안	금회	5	5	5						0	
	누계	131	130	128	2	0	0	0	0	1	
기 타 의 안	금회	2	2	2						0	
	누계	49	49	49	0	0	0	0	0	0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 회	27	27	0	0	0	0	0	0	27	23	4	0	0	0	0
	누 계	655	383	0	0	222	35	12	3	652	573	48	16	15	0	3
운 영 위 원 회	금 회	1	1					0		1	1					
	누 계	24	12	0	0	0	0	12	0	23	19	4	0	0	0	1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금 회	4	4							4	3	1				
	누 계	124	87	0	0	36	0	0	1	123	112	6	0	5	0	1
환 경 지 복 위 원 회	금 회	6	6							6	6					
	누 계	114	86	0	0	28	0	0	0	114	105	1	0	8	0	0
농 산 업 경 제 위 원 회	금 회	3	3							3	3					
	누 계	159	59	0	0	100	0	0	0	159	133	12	12	2	0	0
문 화 설 건 전 위 원 회	금 회	6	6							6	5	1				
	누 계	91	56	0	0	35	0	0	0	91	84	4	3	0	0	0
교 육 위 원 회	금 회	7	7							7	5	2				
	누 계	108	83	0	0	23	0	0	2	107	94	12	1	0	0	1
특 별 위 원 회	금 회	0	0				0			0						
	누 계	35	0	0	0	0	35	0	0	35	26	9	0	0	0	0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미			
		계	조	규	규	승인동의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계	가결		부			철	료	상
											원	수						
총	금회	11	3	1	0	0	0	5	2	11	11							
	누계	184	8	7	0	4	0	119	46	184	184	0	0	0	0	0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미			
		계	조	규	규	승인동의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계	가결		부			철	료	상
											원	수*						
총	금회	38	30	1	0	0	0	5	2	38	34	4	0	0	0	0		
	누계	804	374	7	0	209	35	130	49	821	757	48	13	3	0	0		

\* 위원회 수정안 가결

##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윤수봉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4. 2.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70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인용 조례 제명 및 조항번호 변경사항 반영
- 기금 사용계획의 운용수입금 한도 내 수립 규정 삭제
-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범위 및 절차 명확화

##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병도·김이재·이병철 의원 (찬성의원 6명)		제 출 일 자	2024. 2. 1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67호

□ 제안이유

-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지배가 종식된 지 약 8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유무형의 일제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음.
- 이에 일제 잔재를 찾아내고 이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족정기 회복과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연구조사, 홍보 및 교육, 인력양성, 문화예술 사업 등 지원사업
- 전수조사 결과, 처리 방안,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 사무의 위탁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명연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4. 2. 2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81호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을 보완하고,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따라 ‘만’ 표시 정비

□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일수 확대
- 시간외근무의 저축연가제 도입
- 배우자 및 자녀 입영 관련 특별휴가 일수 확대
-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 행정기본법(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표시 정비
-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규정
- 배우자 출산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4. 2. 2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91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전북특별법,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 시행에 따른 제명 및 조문 정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23. 6. 22. 시행) 사항을 반영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표준안 개정 안내(2023. 9. 14.)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 단서 신설
  -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신설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이수진·박정규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4. 2. 2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65호

□ 제안이유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보제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 지원 대상, 지원사업,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환수 조치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윤영숙·황영석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4. 2. 2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72호

□ 제안이유

- 2023년 제정·시행된 상위법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현행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과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함
- 스토킹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규정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함
- 그 외 각 조항에 “스토킹범죄”를 “스토킹”으로 변경함

##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4. 2.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62호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감면’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조례 감면율을 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확대
-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확대
  -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 취득세 50% 추가 감면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본점·주사무소·공장 이전
    - 취득세 50% 추가 감면
  -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 취득세 25% 추가 감면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4. 2.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63호

□ 제안이유

- 신규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 산정 및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물가상승 등 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및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여 휴양림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기존 시설 사용료 인상 및 신규 시설 사용료 산정
-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입장제한 기준 신설
- 시설물 사용의 예약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
- 객실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한 예약제외 시설 운영기준 신설
- 예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자 예약 기준 신설
- 이용객 부담 최소화를 위해 위약금 기준 보완
- 휴양림 매매·교환 등 금지 규정 신설

##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4. 2.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94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예외 조항이 상이하여 법률에 따라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는 행위 제한(안 제7조)

##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성수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4. 2.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68호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을 방지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송달 비용 감소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열거 규정을 포괄 규정으로 정비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제고함
-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1매당 세액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금액(45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함

##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김동구·나인권·최형열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4. 2.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77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육성사업에 대해 규정함
- 공동 연구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협의회 운영, 준용에 대해 규정함

##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강대창·임승식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4. 2.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71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기상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
- 위기상황 결정에 관한 사항
- 지원항목에 관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진형석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85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학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
- 학생 정신건강증진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매년 학생 정신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에 관해 규정함
-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제 출 자	김정기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75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도 건설 또는 구조개선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도로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해주지 못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기 위함

□ 주요내용

-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산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
- 보상신청방법, 보상제외 대상을 정함
- 사실확인 및 측량조사에 대한 사항을 정함
-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결정방법에 대하여 정함
- 보상금 지급방식 및 통지방법에 대하여 정함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수진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76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 및 빈집정비활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우므로 기존 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로 일원화하고, 빈집정비사업의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빈집,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 종전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던 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의 관리,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빈집의 활용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이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문승우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74호

□ 제안이유

- 도내 건설기업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개발·활용할 경우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 안전이 발생한 경우에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존 위원회 구성인원에서 상한기준을 11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표결 시 변별력을 높이도록 하였음
- 심의사항을 보다 명료하게 개정하고, 추가적으로 신기술의 사전성능 검증이 필요한지 여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 발주 등 계약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
- 최근 신기술이 다수 적용되고 있는 환경, 자연재해, 교통분야 신기술을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장연국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86호

□ 제안이유

- 재학 중 발생한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개별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건강장애학생의 성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교원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장연국·서난이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87호

제안이유

-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수요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대중·이병도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66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조례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협조사항 등의 미비점을 함께 보완하여 노동복지 증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조문 제목을 ‘적용대상’으로 변경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적용대상을 전북특별자치도의 모든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개정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유관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주 및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도록 규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협조사항’ 항목을 신설
- ‘산업안전지킴이단’에 대한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
- 띄어쓰기 및 어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과 조례의 적확성을 반영하여 조문제목 및 조문 개정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진형석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88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의 다양한 소통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자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함

##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박용근·임승식·황영석·강동화·이병철·김만기·윤정훈 의원 (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73호

### □ 제안이유

-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중도장애의 비율이 80% 이상인 실정임에도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 체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도장애인이 병원 등에서 재활을 마치고 원활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명시
-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사업 명시
-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명시
- 협력체계 구축 명시

##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명연 의원 (찬성의원 15명)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69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웰니스관광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웰니스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웰니스관광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웰니스 관광 시설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위탁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전용태·나인권 의원 (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78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인삼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가공·유통·수출에 대한 지원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
-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및 인삼류 가공분야 지원방안에 대해 규정함
-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명지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89호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가산 대상 및 가산 일수를 확대하고, 경조사 휴가 부여 대상 명시, 장기재직휴가 및 포상휴가 부여 등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
- ‘경조사 휴가’ 일부개정
- ‘장기재직휴가’ 일부개정
- ‘학습휴가’ 일부개정
- ‘포상휴가’ 규정 신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박정희 의원 (찬성의원 13명)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90호

제안이유

-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교육감 책무 사항을 정함
- 추진사업 사항을 정함
- 업무위탁 사항을 정함
- 협력체계 사항을 정함
- 포상 사항을 정함

##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김대중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79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
-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
- 푸드테크산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
- 푸드테크산업의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함
-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위원회 기능에 대해 규정함
- 푸드테크 인증 기업 등에 대해 규정함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 출 자	의 장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6.		이 송 기 관	의장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선임내역

구 분	성 명	경 력	비 고
도 의 원 ( 3 명 )	박 정 규	·現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윤 영 숙	·現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	
	한 정 수	·現 교육위원회 위원	
회 계 사 ( 1 명 )	이 철 희	·現 이철희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세 무 사 ( 2 명 )	이 한 철	·現 세무법인 청담 대표세무사	
	김 현 승	·現 세무법인 정성 대표세무사	
변 호 사 ( 1 명 )	황 선 철	·現 황선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직 공 무 원 등 ( 8 명 )	박 중 배	·前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장	
	정 재 철	·前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안 동 환	·前 전라북도 인재양성과장	
	육 흥 기	·前 전라북도 국제협력과장	
	이 주 철	·前 전라북도 회계과장	
	이 동 현	·前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강 군 석	·前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연수원 부장	
	장 윤 희	·前 전라북도 법무행정과장	

##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이병철·임승식·황영석·윤정훈·강동화· 김만기·박용근·이명연·윤수봉 의원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2. 27.
	의 결 일 자	2024. 3.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80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 관련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
- 내수면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업지원과 지원대상을 규정함
-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대상 선정 등 심의가 필요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협의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
-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도록 규정함
- 내수면어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윤정훈·이명연·박용근·최형열· 윤수봉·황영석·김희수·강동화·오현숙 의원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6.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소유자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의 경영 활동이 제한받고 있음.
-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 보호구역은 임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 실정임.
- 이에,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공익 규제를 받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최형열 의원 (찬성의원 15명)		제 출 일 자	2024.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6.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극심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농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주무부처이며 실질적인 운영·관리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5년 19명에서 2023년 39,657명, 2024년 상반기 49,286명으로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양적 팽창세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운영위원장		제 출 일 자	2024. 3. 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84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안건 이해관계인의 기피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기피” 관련 사항을 신설함
  -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 가능, 위원회 의결로 결정
  -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 \* 기피 :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위원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운영위원장		제 출 일 자	2024. 3. 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82호

□ 제안이유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 제한이 필요

□ 주요내용

- 심사위원 연임 제한 규정 추가
  - (현행)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개정)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운영위원장		제 출 일 자	2024. 3. 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등 국가직 인사제도 개선에 맞춰, 국가직과의 균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
  - (현행)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개정)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과장급이상 시간선택제 응시 유형별 경력요건 명확화
  - 민간 경력으로 과장 직위에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
  - 학위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근무 경력요건 폐지
- 응시원서 상의 ‘탈모’ 용어 개정
  -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운영위원장		제 출 일 자	2024. 3. 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3. 29.		공 포 번 호	제5483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23.12.14.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 위원회 회의 결정(‘24.2.23.)에 따라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월 1,500,000원(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에서 월 2,000,000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1,500,000원, 보조활동비 500,000원)으로 상향함

##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정수 의원 (찬성의원 14명)		제 출 일 자	2024. 3. 1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체계와 마찬가지로 광역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지휘체계(조직구조) 확보가 필요함
- 지방정부의 경우 인구 10만 미만 자치단체는 부단체장과 실·국장의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과 광역시 자치구·군의 부단체장 직급을 2024년부터 3급으로 상향하였음 (5만 미만 부단체장은 2025년 적용)
- 집행기관의 조직체계 개선과는 달리, 이를 감시·견제하는 광역의회 사무조직의 경우 사무처장(1·2급) 아래 국장(3급)이 아닌 담당관(4급) 또는 전문위원(4급)으로 제한하고 있어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음
- 이에 광역의회 사무조직의 안정적인 조직구조를 기반으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의회의 국장(3급) 직위 신설을 건의함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효과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이수진 의원 (찬성의원 19명)		제 출 일 자	2024. 3. 1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해당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 하지만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현행법에는 지역인재를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 공공기관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해 타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채용 의무 대상에 제외돼, 기존 지역인재와의 역차별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지역의 한정된 인력자원으로 인해 특정 대학 출신이 독점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특정 대학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공공기관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자까지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범위도 광역화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함

## 국가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강태창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4. 3. 1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3. 14.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3. 15.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 현행 정부 예산편성 시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 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 과정이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기재부만의 독점적 기득권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재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함

###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 1. 접수현황

○ 분야별

(2024. 2. 3. ~ 3. 14.)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의지	환경	산업경제	문화체육관광	농축수산	교통	도시계획	건설	건축	기타
금회	6				2									4
2024년누계	14	1	1	1	2									9

○ 제출자별

구분	계	인원별					기관단체
		소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회	6	6	6				
2024년누계	14	14	14				

#### 2. 처리현황

구분	계	처리별					처리중
		소계	처리	불수리	취하	타기관이송	
금회	6	6	6				
2024년누계	14	14	14				

###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2대)

(2022. 7. 1. ~ 2024. 3. 14.)

구분	위원회별	접수	처리상황				비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 까지	소 계	<b>170</b>	<b>170</b>	<b>170</b>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10	10	10			
	환경복지위원회	7	7	7			
	농산업경제위원회	2	2	2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2	12	12			
	교육위원회	63	63	63			
	기타	76	76	76			
금회	소 계	<b>6</b>	<b>6</b>	<b>6</b>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타	6	6	6			
누계	소 계	<b>176</b>	<b>176</b>	<b>176</b>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10	10	10			
	환경복지위원회	7	7	7			
	농산업경제위원회	2	2	2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2	12	12			
	교육위원회	63	63	63			
	기타	82	82	82			

##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1. 2024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24. 2. 5. ~ 3. 14.)

기관별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74	74		100
누 계		131	131		100	
전북특별 자치도	금 회	58	58		100	
	누 계	103	103		100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금 회	16	16		100	
	누 계	28	28		100	

### 2. 2024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24. 2. 5. ~ 3. 14.)

기관별	구 분	계	행 정 자 치	환 경 복 지	농 산 업 경 제	문 화 건 설 안 전	교 육	운 영	특 별
	계	금 회	74	12	12	13	20	15	
누 계		131	28	17	26	38	19		3
전북특별 자치도	금 회	58	12	10	11	17	6		2
	누 계	103	23	13	22	34	8		3
전북특별 자치도 교육청	금 회	16		2	2	3	9		
	누 계	28	5	4	4	4	11		

### 3. 제12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22. 7. 1. ~ 2024. 3. 14.)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1,236	1,236		
전북특별자치도	947	9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89	289		

### 4.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22. 7. 1. ~ 2024. 3. 14.)

구 분	계	행정 자치	환경 복지	농산업 경제	문화건설 안전	교 육	운 영	특 별
합 계	1,236	239	263	244	230	235	2	23
전북특별 자치도	947	207	213	220	214	74	2	17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289	32	50	24	16	161		6

### 5.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22. 7. 1. ~ 2024. 3. 14.)

구 분	계	행정 자치	환경 복지	농산업 경제	문화건설 안전	교 육	운 영	특 별
합 계	2,827	522	596	583	591	502	4	29
전북특별 자치도	2,214	467	503	515	557	145	4	23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613	55	93	68	34	357		6